

서울특별시 공무원 일반종사원 채용시험 공고

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할 공무원 일반종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2023 2월 1일

서울특별시장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| 채용분야 | 채용구분 | 채용등급 | 채용인원 | 근무예정 부 서 | 담당직무 내용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일반종사원 | 일반 | 공무직 | 1명 | 행정국 총무과 | ◦ 간식 조리, 조리보조, 식자재 전처리, 세척, 청소, 배식, 위생관리 등 |

※ 근무조 편성에 따라 간식조리, 조리보조, 전처리, 세척, 배선 등 구내식당 업무 전반을 맡을 수 있음

2. 응시자격
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거주지 제한 없음)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
-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자
(주민등록상 1964. 2. 01. ~ 1973.12.31. 사이 출생한 자)
- 신체건강한 자로서 구내식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
-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(채용 결격사유) 및 공무원 단체협약 제19조(정년)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(적용기준일 : 채용 공고일)

■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(채용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

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■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※ 결격사유 조회 :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<http://www.share.go.kr/>) → e하나로 민원
- 공무원 단체협약 제19조(정년)
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.

○ 취업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 4명 미만으로 미적용

3. 고용조건

- 근무시간 : 주40시간, 1일 8시간(탄력근무제 적용)
- 보수조건 : 공무원(일반종사원) 임금표에 따라 지급
 - 연 봉 : 26,841천원(1호봉 기준) ※ 붙임 직종별 급여표 참조
- 채용해지 :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
 -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
 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
 -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

4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시험일정

| 구 분 | 일 정 | 장 소 | 기간 | 비 고 |
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
| 모집공고 | 2023.2.1.(수)~2.10.(금) | 서울시 홈페이지,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| 10일 | |
| 원서접수 | 2023. 2.13.(월)~2.15.(수) (09:00~18:00) |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14층 총무과 별관운영팀 | 3일 | 방문, 우편 |
| 1차합격자 발표 | 2023.2.22.(수) | 서울시 홈페이지,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| 1일 | 채용인원의 5배수 |
| 2차시험(면접) | 2023.2.28.(화) (14:00 ~18:00) | 서울시청 회의실 | 1일 | 예정 |
| 결격사유 조회 | 2023.3.2.(목)~3.3.(금) |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| 2일 | |
| 채용승인 심의 | 2023.3.31.(월) | 공무직인사위원회 | 1일 | 인사과 |
| 최종 합격자 발표 | 2023. 4. 3.(월) | 서울시 홈페이지,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| 1일 | |
| 근로계약 체결 | 2023. 4. 7.(금) |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4층 총무과별관운영팀 | 1일 | |
| 신규 임용 | 2023. 4.10.(월) | 행정국 총무과 | | |

※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3. 2.13.(월) ~ 2.15.(수), <09:00 ~ 18:00>

※ 점심시간(12:00 ~ 13:00) 제외

- 접수처 :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14층 총무과별관운영팀
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(등기) ※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

·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

·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,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별관운영팀

·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(서류 분실 방지 목적)

·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/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
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
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시험 방법

가. 1차 서류전형 :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(선발인원의 5배수)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
- 제출서류
 -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, 기타 서류 등
- 우대(가산) 특전

| 합계 | 자격증 | 경력사항 (300명이상 집단급식소 경력합산) | | | | |
|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| 25점 | | | | |
| 50점 | 25점 | 25점 | | | | |
| | 조리사 관련 자격증 - 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, 복어 조리산업기사 및 조리기능사 | 5년이상 | 5년 미만 ~4년 이상 | 4년 미만 ~3년 이상 | 3년 미만 ~2년 이상 | 2년 미만 ~1년 이상 |
| | | 25 | 20 | 15 | 10 | 5 |

- 동점자 발생 시 집단급식소 경력 기간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로 합격 처리

나. 2차 면접심사 : 개별통지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- 자질 및 발전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합격자 발표일/방법 : 2023. 2.28.(화)/개별통보

다. 최종 합격자 발표 : 개별통지, 홈페이지 공고

-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등 상세사항은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시 안내 예정임

«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»

- ① 서약서 1부 ②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(최근 3개월 이내) 1부 ③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재분) 1부
- ④ 자격증 원본

5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(별지1 서식) 1부.
- 이력서(별지2 서식) 1부.
 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
- 자기소개서(별지3 서식) 1부.
 -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 기재 금지
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별지4 서식) 1부.
-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.(**원본, ※ 사본 제출시 불인정**)
 - 경력증명서는 **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**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
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(**누락시 증명서 불인정**)
 -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집단급식소 규모(300명 이상 집단급식소 해당 여부)를 표기하여 제출

-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, <http://www.nhic.or.kr>에서 발급) 등 자료 제출(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)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

○ 기타 필요한 서류(자격증 사본 등)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(경력증명서 제외)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,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).
-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반환합니다. 다만,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합니다.
 - ※ 응시표 및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이 없을 경우,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(불합격 처리)
-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(2명)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총무과 담당(강영심 ☎ 02-2133-160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**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당부사항**

- ▶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.
- ▶ 자가격리자 및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외국을 방문한 응시자는 가급적 시험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해당자는 시험시행일전에 반드시 행정국 총무과 (☎02-2133-1604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시험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코로나19 주요증상(발열, 기침, 구토 등) 의심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